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88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조승래 · 김영진 · 김영배
장종태 · 김준환 · 김성범
이광재 · 박용갑 · 황정아
朴芝源 · 이용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낙찰자의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하며, 자격 미달 업체가 허위로 입찰한 뒤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최종 낙찰자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을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순위에 있는 입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낙찰예정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입찰보증금) ① · ② (생략)	제9조(입찰보증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u>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u>	③ ----- ----- <u>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될 순위에 있는 입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u> ----- ----- ----- ----- -----.
<신설>	1. <u>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u>
<신설>	2. <u>낙찰예정자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u>
<신설>	3. <u>그 밖에 입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